



의안번호	제 2020 - 8호
의 결 연 월 일	2020. 3. 23. (제101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제 출 자	운영지원단장
-------	--------



목 차

I.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1
II. 전문위원 개임, 위촉장 수여식 개최	2
III. 자문위원 해촉	
1. 개요	5
2. 진행경과	5
3. 자문위원 명단	6
IV.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보고	
1. 개요	7
2. 성범죄,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회신 의견 종합	7
V. 성범죄,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 공개(의결 후 절차)	
1. 개요	45
2. 관련 규정	45
3. 공개 방법	46
4. 추진 일정	46
VI.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1.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의견 보고	47
2. 서면 질의 등 민원 및 회신	48

□ [별지1], [별지2] 「신임 전문위원 프로필」

□ [별첨] 「의견조회 회신 자료」



I.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 운영지원단은 전문위원 전체회의의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음
- 전문위원 전체회의 개최 현황

회의명		일 시	안 건
전문위원 전체 회의	제132차	2020. 3. 9. 16:00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균형법 상 성범죄 양형기준 추가) 및 교 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검토

II. 전문위원 개입, 위촉장 수여식 개최

1. 개요

- 2020. 3. 2.자로 김호용 전문위원 해촉(사임)
- 2020. 3. 10.자로 정초아 전문위원 해촉(사임)
-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전문위원 위촉

◆ 관련 규정 ◆

양형위원회규칙 제8조 (전문위원)

-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둔다.
- ② 전문위원은 양형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법관, 검사, 변호사, 교수 또는 기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법관 중 1인을 수석전문위원으로 지명한다.

2. 고려사항

- 연구업무의 연속성 확보 및 분위기 쇄신
 - 종전 연구 성과를 토대로 제1, 2, 3, 4, 5, 6기 양형기준 수정 및 제7기 양형기준 설정을 위한 업무 수행
- 정기적인 업무수행 평가를 통해 전문위원 제도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
 - 그동안의 전문위원의 연구 성과와 활동 내역을 객관적으로 검토·평가하여 개선 방안 모색
- 전문위원 선정 원칙의 반영
 - 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 유지·강화
 - 전문위원 연령 및 전문성 고려
 - 다양한 전공분야 안배
 - 추천 기관 또는 위원 의견 존중

3. 위촉 내역

▣ 신규 위촉

- 백광균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판사) (2020. 3. 2.자)
- 이형일 군법무관 (2020. 3. 23.자)

4. 위촉장 수여식 개최

- 일 시 : 2020. 3. 23.(월) 15:55
- 장 소 : 대법원 1601호 중회의실
- 위촉장 수여 : 양형위원회 위원장
- 위촉대상자 : 백광균, 이형일 전문위원

※ 신임 전문위원의 자세한 경력은 [별지1], [별지2] 각 신임 전문위원 프로필 기재와 같음

5. 전문위원 구성

구분	성명	기수	소속	직위	최초위촉일
법원	손철우	제25기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	18.02.27.
	최승원	제30기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	19.02.27.
	백광균	제37기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판사	20.03.02.
검찰	김춘수	제28기	대검찰청 연구관	부장검사	19.08.06.
	유관모	제38기	대검찰청 연구관	검사	20.02.17.
변호사	범현	제30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10.08.20.
	김희연	제41기	김희연 법률사무소	변호사	17.03.07.
	이형일	제14회 군법무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	군법무관	20.03.23.
교수/ 전문가	강수진	제24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3.05.16.
	한상규	제24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7.05.16.
	김혜경	해당없음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15.05.16.
	최준혁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3.08.20.
	박성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9.09.09.

Ⅲ. 자문위원 해촉

1. 개요

- 양형위원회는 공청회 개최,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의 방법 이외에도 운영규정 제27조 제2항에 따라 다양한 직역의 인사들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양형기준 설정 및 변경을 비롯한 양형위원회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하여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 자문위원단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교육계, 노동계, 여성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직역의 명망가·전문가로 구성

2. 진행경과

- 문영화 위원 2020. 2. 26.자로 사임

3. 자문위원 명단

분야	성명	경력	최초위촉일
학계	문채규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6. 1. 7.
	오미영	가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14. 3. 10.
	홍은희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	”
	고학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7. 8. 21.
	서창록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사단법인 휴먼아시아 대표)	”
	이상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8. 12. 10.
	고문현	승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장영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언론계	김세형	매일경제신문 논설고문	14. 3. 10.
	변상욱	CBS 대기자	17. 8. 21.
시민, 사회단체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14. 3. 10.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상임대표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17. 8. 21.

IV.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보고

1. 개요

성범죄 및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하여 양형위원회규칙 제11조에 따라 대법원, 국회,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단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회 결과는 아래와 같음

가. 대상 기준안

- 전문위원단 검토 내용을 기초로 양형위원회 제99차 회의(2020. 1. 6.)에서 의결한 성범죄(균형법상 성범죄) 및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나. 조회 기간

- 2020. 1. 13. ~ 2020. 2. 24.

다. 회신 기관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 46개(국회 4개 상임위원회 포함) 조회 대상 기관 중 6개 기관이 회신
- 대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성폭력상담소

○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 46개(국회 5개 상임위원회 포함) 조회 대상 기관 중 6개 기관이 회신
- 대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라. 회신자료

- 별첨 「성범죄,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의견조회 회신 자료」와 같음

2. 성범죄,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회신 의견 종합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회신 의견

가. 대법원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 따로 양형인자표를 마련하지 않아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의견
 - 구체적인 내용 아래 참조(수원지법 2019고합110 등 판결)
 - 행위인자에 감경요소가 1개 있고, 행위자/기타인자에 가중요소가 1개 있는 경우인데, 양형기준상 행위인자가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우월하게 평가되어야 하므로(소위 '행위인자 우월원칙') 이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을 선택하여야 한다. 그런데 '강간치상죄'의 양형기준을 '강간죄'의 양형기준과 비교하면, 피고인이 '강간죄'로 기소된 경우에는 감경요소에 '경미한 상해'가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만이 가중요소가 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강간죄의 가중영역(징역 4년 ~ 7년)이 권고되지만, 피고인이 '강간치상죄'로 기소된 경우에는 그 죄가 '강간죄'보다 중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미한 상해'가 우월한 감경요소가 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강간치상죄의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이 권고된다. 양형기준상 이와 같이 불합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행위인자 우월원칙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강간치상죄'의 '기본영역'을 선택하기로 한다.
- 균형법상 성범죄의 경우 법정형이 일반형법상 성범죄보다 높게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균형법 적용대상자가 병사들인데 병사들의 경우 대부분 동성 간의 범죄이고 단체생활을 하는 관계로 민간인에 비해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낮지 않다고 보아므로 양형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일반 형법과의 간극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나. 법무부

○ 의견 없음

다. 대한변호사협회

(1)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 등 강제추행, 강간 등 균형법상 성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신규 설정하는 것임.

균형법상 성범죄 신규 설정의 방식은 기존 성범죄 양형기준의 대유형1 일반적 기준과 대유형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각 중유형으로 ‘균형법상 성범죄’를 추가시키는 방식으로 함(다만, 대유형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균형법상 성범죄에 대한 별도 중유형 추가 없이 기존 양형기준을 그대로 사용).

일반 성범죄에 비하여 가중된 형량범위를 설정하고, 상관으로서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함.

(2) 검토의견 : 찬성 의견

(가) 결론의 요약

군사범죄 양형기준 설정 확대의 필요성, 「균형법」상 성범죄 가중처벌의 합리성, 형량범위의 적절성, 양형인자 추가의 상당성 등에 비추어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찬성합니다.

(나) 구체적 검토

1) 군사범죄 양형기준 설정 확대의 필요성

군사재판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군사법원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므로 「균형법」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규 설정하는 내용에 찬성합니다.

2) 「군형법」 상 성범죄 가중처벌의 합리성

군사재판에 특별법은 개념적으로 일반법의 모든 구성요건을 포함하면서 그 밖의 특별한 표지까지 포함한 경우를 뜻합니다. 「형법」에 성범죄 관련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군형법」에서 성범죄의 주체와 객체가 군인 또는 준군인인 경우를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정한 것은 군의 존립목적과 그 임무의 특수성을 입법 정책적으로 고려한 입법자의 결단이라고 사료됩니다. 즉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에 더하여 「군형법」의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군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를 확립하여 군의 전투력을 유지, 강화하는 것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해석됩니다.¹⁾

3) 형량범위의 적절성

성범죄의 양형기준은 세분화된 다양한 구성요건이 입법되어 있는 관계로 범죄행위의 특성이 유사하거나 권고 형량범위가 비슷한 여러 구성요건을 묶는 방식으로 범죄유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은 「군형법」 상 성범죄를 각종 성범죄와 비교하여 책임의 경중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에 상응하는 형량범위를 적절하게 부여하였다고 평가되므로 찬성합니다.

가령 군인등장간의 형량범위는 감경영역 2년6월-5년, 기본영역 4년-7년, 가중영역 6년-9년인데, 이는 ①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유사장간(위계·위력유사성교 포함), ②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③ 13세 이상 대상 일반장간상해/치상, ④ 청소

1) 군이란 궁극적으로 무력에 의하여 국가를 수호하고 국토를 방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함을 그 사명으로 하므로 이러한 군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특수한 조직과 고도의 질서 및 규율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질서와 규율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유지, 강화되지만, 최후의 수단은 형벌이라는 실력적 제재수단을 통해 이뤄진다. 이렇듯 군형법은 군사범죄라는 특수한 범죄유형을 설정하고 그에 대하여 준엄한 형벌의 제재를 규정함으로써 군조직의 질서와 규율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며 전투력을 보존, 발휘케 하여 종국에는 전투에서 승리를 얻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3헌바111 결정).

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상해/치상, ⑤ 성년 유사강간상해/치상, ⑥ 13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상해/치상, ⑦ 13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상해/치상, ⑧ 군인등강제추행상해/치상과 동일한 형량범위로서 적절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또한 군인등강간상해/치사의 형량범위는 감경영역 3년6월-6년, 기본영역 5년-8년, 가중영역 7년-10년인데, 이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상해/치상과 동일한 형량범위로서 적절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4) 양형인자 추가의 상당성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은 「군형법」 상의 성범죄의 양형인자와 관련하여 기존 성범죄 양형기준의 양형인자를 원용하되, 범죄의 주체와 객체가 모두 군인 또는 준군인인 경우여서 일부 무관한 양형인자(가령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 청소년에 대한 범행 등)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상관으로서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엄격한 상명하복관계가 존재하여 상관의 지시를 거부하기가 매우 곤란한 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당해 범죄유형의 형량에 큰 영향력을 갖는 인자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찬성합니다.

라. 대한법무사협회

- 양형기준 수정안에 찬성하므로 특별한 의견 없음

마. 한국여성변호사회

(1) 의견 요지

군형법상 성범죄의 특별양형인자 중 ‘상관으로서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에 명시적으로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뿐

만이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

(2) 의견 내용

귀 위원회의 균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 신규 설정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동의하며 아래 언급하는 이외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즉, 통번호 21쪽에 나와 있는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인 ‘상관으로서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후략)’와 관련하여 통번호 37쪽 양형인자의 정의 라.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관(균형법 제2조 제1호 전단의 상관을 의미한다)으로서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명시적으로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범행을 수월하게 한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대 내 계급, 서열과 상명하복문화, 지휘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최근 ‘성인지 감수성’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9. 9. 9. 선고2019도2562 판결)에서도, 성범죄에서의 ‘위력’이란, 행위자의 사회적, 경제적, 정체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실제 군대 내에서 상관이 직무상권한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것은 묵시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성범죄 양형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더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 정의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으로 수정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바. 한국성폭력상담소

(1) 성범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는 가해자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와 ‘균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에 대하여 설정 또는 수정 논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성폭력 유형에 대한 양형기준도 기존의 성범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구성될 것입니다. 기존의 성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평가와 검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예컨대 ‘진지한 반성’으로 꼽히기도 하는 피고인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꼼수 기부’와 그에 대한 입금 증명의 법정 제출 같은 경우, 디지털 성범죄 피해인들이 더 많이 꼼수기부를 시도하는 것으로 본 상담소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범죄 양형기준, 그 중에서도 특히 감경요소는 오랫동안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되어 온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가족, 학교, 직장, 사회관계 내 권력적 위치와 위계적 우위를 이용해서 대부분 일어나는 성폭력에서,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나 ‘경제활동에 높이 기여해온 점’ 등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될 경우 해당 지위나 힘을 이용하여 같은 공간에 소속된 피해자에게 변치 않는 힘을 행사하게 될 가능성이 큼니다. 성폭력을 쉽게 가능하게 했던 요인이, 성범죄 피고인을 감경해주는 요소로 인정된다면 성폭력이 발생하는 기울어진 권력관계는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라는 제목의 청원이 264,102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최협의 폭행 협박 등 판단기준, 법정형의 문제도 있지만 양형 판단 기준에 대한 분노와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요소가 단 한개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는 어떻게 피해자를 불리하게 해

왔던 요소였는지, 가해자 중심적인 사고였는지 비판하는 것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통되는 감경요소로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여부와 정도, 심신미약, 부양가족의 존재, 사회적 유대관계 등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반성문, 피해자와의 합의, 탄원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개인 사정 등을 양형근거로 참작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하여 감형과 선처를 목적으로 변호사의 코칭에 따라 수십 개의 양형자료를 구비하고, 허위로 양형 자료를 꾸며내는 등의 방식으로 형량을 감형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지나치게 관대한 감경 기준을 적용할 때 성폭력에 둔감해지는 사회가 조장되고 성폭력을 묵인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근본적 변화가 시급합니다. 즉, 가해자에게 적절한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가해자의 행위책임을 물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형벌의 응보의 목적을 넘어 교화적 목적 및 위하력 효과를 고려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본 상담소는 이러한 관점에서 2019년도에 선고된 성범죄 형사판결²⁾을 분석하여 현재 법원이 적용하고 있는 양형기준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제안하고자 합니다.

(2) ‘진지한 반성’에 의한 감경

(가) ‘진지한 반성’에 의한 감경의 실태

2) 로앤비와 법원 종합법률정보에 등록된 총 137개의 판결들을 분석하였다. 2019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선고된 1심과 2심 판결이 분석 대상이 되었다. 검색한 죄명은 강간, 간음,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 위계, 위력, 업무상위력, 13세미만, 심신미약자추행, 음행매개, 음화반포, 음화제조, 공연음란, 성적목적, 통신매체, 통신매체 이용음란, 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 음란물,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아동청소년 성매매 성매수 성매매 강요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인턴 및 실무수습 김채연, 박민아, 남현이, 김열국, 이원경, 김유엘, 권유진, 권혜준이 참여하였다.

양형위원회는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특별 양형 인자로 ‘처벌불원’을, 일반 양형 인자로 행위자의 ‘진지한 반성’을 감경요소로 두고 있고, 양형인자의 정의로서 ‘처벌불원’ 항목에 대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뤄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을 어떤 근거로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에 따라 당연한 형벌을 감형하기 위해 ‘진지한 반성’을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가해자들은 감형을 위해 반성문 대필, 꿈수 기부·사회봉사, 가해자 가족을 동원한 호소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성’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나) ‘진지한 반성’의 판단기준의 불명확성과 불합리성

2019년도에 선고된 하급심 137건의 판결 중 1/3에 달하는 판결들이 피고인의 ‘반성 및 뉘우침’을 양형의 고려 요소로 판시하고 있습니다.³⁾ 예컨대 2018고합441에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판시하여 피고인들의 진지한 반성을 양형요소로 고려하였으며, 2019노223에서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감경요소로 빈번하게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판결문에서 법원은 가해자의 ‘반성’에 대한 판단근

3) 총 48건의 판결들에서 ‘반성 및 뉘우침’을 양형의 요소로 삼고 있었다.

거를 명확하게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 판례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선례로서의 판례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로 인해 법관들의 자의적 판단이 이루어짐으로써 양형의 편차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에 관한 판단근거가 제시된 판결들에도 비판점은 존재합니다. 일방적인 후원·기부나 사회봉사 사실을 ‘진지한 반성’에 대한 판단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판단의 타당성이 의심되기 때문입니다. 2015노95 판결에서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정기 후원금을 납부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이 참작되어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의 기소 즈음 후원금을 납부하기 시작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1심 재판 이후 단 1회만 더 후원금을 납부하고 이후 후원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진지한’ 반성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⁴⁾ 실제로 전국성폭력상담소 협의회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성범죄자로부터 기부·후원 제안을 받았거나, 납부가 확인된 사례는 모두 101건에 이릅니다.⁵⁾

뿐만 아니라 반성문 대필사업이 공공연하게 성행하고 있는 점,⁶⁾ SNS를 통해 ‘양형 시 제출서류 팁’이나 ‘성범죄 대응매뉴얼’ 등이 공유되고 있는 점⁷⁾ 등을 볼 때, 가해자의 반성이 형식적 절차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감경사유 규정에서 드러나듯 ‘진지한 반성’을 감경사유로 규정하는 목적은 피해자

4) 여성신문. “성폭력상담소에 기부하면 감형”.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363>. (2020.02.10.)

5) 아시아타임즈. “기부·후원 영수증 속에 감춰진 양형기준, '유전소죄 무전대죄'”.

<https://www.asiat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2937>. (2020.02.10.)

6) 포털에서 ‘반성문 대필’을 검색하였을 때 나오는 반성문 대필 전문 사이트만 33개에 달한다.

7) 성범죄·형사범죄 전문지식 공유 카페. <https://cafe.naver.com/spjahayun>. (2020.02.10.)

의 피해 회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지한 반성'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현실에서 위와 같은 판단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반성의 진정성을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제출한 서류를 통해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형식적 반성'을 바탕으로 감형을 하게 되어 '진지한 반성'을 양형기준으로 고려하는 목적과 의의에 어긋나는 결과를 야기합니다.

(다) 제언

형벌을 부과함에 있어서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응보뿐만 아니라 범죄의 예방, 범죄인의 교화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가해자의 반성을 감형요소로 고려할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성 여부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 그 기준이 합리적이고 '피해자 중심적'이어야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특히 판례의 경향을 볼 때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사례를 제외하고 대부분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처럼 반성을 감형요소로써 남용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진지한 반성의 여부가 감형요인으로 자주 고려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반성문 대필 사이트 등이 성행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형식적인 기준을 넘어서 '진지한 반성'임이 확실히 드러날 때만 이를 감형요소로 고려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반성 여부를 판단할 때 보다 보수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해자가 제출한 반성문을 일일이 읽어본 후 그 진실성 여부를 판단하며 반성문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지적하는 재판부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업무 가중 등의 사유로 그렇지 못한 법원이 많습니다.⁸⁾ 현재로서

8) 중앙일보. "아동음란물 다크웹 운영자가 낸 500장의 반성문...5만원 대필도 성행".
<https://news.joins.com/article/23622656>. (2020.02.10.)

반성문의 내용만으로 진정성의 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쉽지 않으므로, 형식적 반성임이 드러나는 경우 이를 오히려 가중요소로 적용할 수 있음을 재판부 차원에서 명확히 하는 등 형식적, 기계적인 반성의 작출을 경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진지한 반성 여부를 양형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고려하였다면, 어떤 점에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였다고 판단하였는지를 판결문에 설시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의 이유를 설시하지 않은 채 반성하였다는 점만 기재하게 되면 ‘진지한 반성’을 감경요소로 남용하는 현상을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양형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국민이 사법부의 판결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사회적 유대관계’에 의한 감경

(가) 관련 판례

2018고합592 판결에서 1심 재판부는 부산대학교 여자기숙사에 침입하여 강간미수 및 상해의 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다른 여러 양형 사유와 더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 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같은 사건의 2심 재판부 역시 가족 등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으며, 이를 재범의 위험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보는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판결들이 가족이나 친지가 선처를 탄원할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인정하여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 형의 감경요소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나) 형의 감경요소로서의 사회적 유대관계

현재 사회적 유대관계는 형의 감경요소 중 하나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 판결에서 가족 및 친지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이 있을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고 하여 형을 감경하는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 이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람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것을 그 사람이 과거 좋은 품성을 보였고 선행을 했다는 징표로 보기도 합니다. 잘못된 과거 행적의 징표인 전과를 양형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좋은 과거 행적의 징표인 사회적 유대관계 또한 양형에 반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것이 재범위험성이 낮다는 근거로서 타당한지 여부

그러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것이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인지, 과거 좋은 행적의 징표인지 비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것은 범죄를 저질러서 형을 선고받을 시 잃는 것이 더 크다는 의미이며,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되면 기존의 유대관계가 훼손될 가능성이 큼니다. 따라서 같은 형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잃는 것이 더 크고, 그러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더 낮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된 점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성폭력 행위자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즉, 그 사람에게는 분명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이 범죄 방지에 그다지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 이미 증명된 것입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상태에서 어려운 첫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후에야 사회적 유대관계를 잃을 것이 두려워 두 번째 범죄는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은 모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라) 사회적 유대관계가 좋은 과거 행적의 징표인지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과거에 좋은 품성을 보이고 선행을 베풀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다지 좋은 품성을 보이거나 선행을 하지 않았어도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

랫동안 남성 중심적인 한국사회에서 성희롱, 성매매, 많은 성적 관계 경험
험이 하나의 사회적 자랑거리나 힘과 지위의 과시로 여겨지고, 남성 중심
적인 사회 유대 관계를 성매매의 제공을 통해서 쌓기도 합니다. 사회적
유대관계에 대한 관습적인 개념이 성폭력에 허용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 선처를 구하는 탄원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사회적 유대관
계가 분명하다는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범죄자가 가족의 생계의 주
수입원이었을 경우 좋은 품성이나 선행을 베풀지 않았더라도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이 선처를 구하는 탄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 제언

앞서 논한 바와 같이 사회적 유대관계는 그 사람이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을 증명하지도, 그 사람의 과거의 좋은 행적을 증명하지도 못하며,
따라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다고 하여 형을 감경하는 것은 재고해보아
야 할 것이며, 나쁜 과거 행적을 전과로 고려하는 것의 반대로 좋은 과
거 행적을 고려하여 양형의 균형을 맞추고자 한다면 사회적 유대관계보
다 신빙성 있고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4) 피고인의 평판과 업적에 의한 감형

(가) 관련 판례

피고인의 평판이나 활동 내역 같은 경우 구체적으로 성범죄 양형기
준에 명시된 감경요소는 아니나,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유로
고려하고 있음이 다수의 판례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
원 2018고단2880 판례의 경우 대학 교수가 업무상 위력으로 다수의
학생들을 추행하였는데, 양형의 이유에서 ‘피고인이 E대학교 교수로 부
임한 이래 열심히 교육활동을 해온 것으로 보이고’ 라고 실시하였습니
다. 서울고등법원 2018노2658, 2019노531(병합), 2018보노20(병합)
판결은 유사강간치상,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조목으로 피고인에

게 징역 7년을 선고하였는데,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이 연극계에 종사하면서 우리나라의 연극 발전에 이바지하였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노2333 판결은 외삼촌인 목사에게 의한 강간사건으로 원심에서 피고인이 25년간 교회의 담임목사로 목회를 해온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음을 실시하며 원심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평판과 업적을 이용한 성범죄 가해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긍정적인 평판을 유리한 사유로 참작할 수도 있습니다. 실형에는 사회 복귀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형을 선고함에 있어 범죄자의 처벌만큼 교화가 중요하므로 평소 착실하게 살아온 가해자에게 실형 대신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뜻이라 봅니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된 사건에서 가해자들은 본인의 평판과 활동 분야에서의 업적을 이용하여 위계에 의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더 쉽게 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거절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여타의 사건들보다 클 것이며, 가해자의 위치만큼 주변인들은 피해자에게 죄책감을 일으키고 2차 피해를 가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고려하여 위판례에서 자신의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였음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유로 언급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유와 불리한 사유가 충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 ‘평판’의 도입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

‘평판’이라는 불분명한 개념이 재판 과정에 개입되면서 양형 사유로 참작되는 동안 피해자의 평소 품행이나 평판이 언급되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대법원 젠더법연구회에서 진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설문 응답한 판사의 90%가 “검사 또는 변

호사가 성범죄 재판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질문을 한다고 생각한 적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피해자의 평소 품행과 평판, 과거 성경험을 문제 삼는 질문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⁹⁾ 이는 재판부의 가해자 중심적인 태도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며, ‘평판’이 어떻게 성폭력 발생과 입막음,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와 가해자에 대한 옹호의 배경이 되어 왔는지 재판부는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범죄에 대한 재판에서 ‘평판’은 비판적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신중하게 배제되어야 합니다.

(라) 제언

우리나라는 이전의 범죄 경력을 재범 위험성 판단의 주요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해당 업계에서 성실하게 활동해 왔고 주변의 평판이 좋다는 사실 역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평판과 업적이 감경 사유로 고려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며, 어떠한 요소는 재범을 돕지 않을 것이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¹⁰⁾ 단순히 범죄 경력이 없고 착실하게 살아왔다는 것만으로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형법의 성범죄 가중요소에 ‘인적 신뢰관계 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긍정적인 평판이 피해자들이 신뢰를 갖게 하여 범죄를 쉽게 저지르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은 아닌지, 오히려 가중요소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양형기준이 가해자 중심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9) 한겨레. “판사 10명 중 9명 “성범죄 피해자에 부적절한 증인신문 경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9435.html?_ns=r3#csidx9376ba92b0e54d4b07a12d81da4ae22. (2020. 02. 10)

10) 이수정, 김경옥(2005). 성범죄 재범율에 관한 바른 이해와 재범 방지 대안 모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3), 83-99.

가해자의 평판이나 업적은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평가가 갈릴 수 있는 주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무분별하게 감안하다 보면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해당 요소를 고려함에 있어 범죄의 본질과 관련성이 있는지, 평판의 신뢰성은 어느 정도인지,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지표가 될 수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 중심적인 재판이 되지 않게끔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5) 주취에 따른 심신미약 감경

(가) 심신미약 감경의 법적 근거와 성폭력 범죄에서의 적용범위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심신미약을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3항은 범죄의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감형할 수 없다고 명시하며 무분별한 심신미약 감경을 제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0조).

성범죄 양형기준은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해 만취 상태에 빠진 경우 오히려 가중인자로 규정하고 있고, 심신미약에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하며, 과거의 경험 등에 비추어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불문하고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나) 주취감경에 관한 상반된 판례

그런데 지난 2018년, 한 2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대학교 여자기숙사에 침입하여 강간의 의도로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

히고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감경사유로 참작하였으며,¹¹⁾ 2심 재판부 역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을 넘어 사실상 심신상실에 가까울 정도로 만취하여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 감경의 합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¹²⁾ 또한 재판부는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심신장애 감경 규정의 적용을 임의적으로 배제할 수 있으나,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이 최소 징역 5년”이 되어 과도한 형벌이 책임주의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하며 “형벌의 기본이 응보에 있음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러한 응보도 책임에 상응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반면 2017고합446 판결에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해 필름이 끊긴 상태로 자신이 투숙하는 모텔 301호에서 피해자가 투숙하던 307호로 이동하여 잠겨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침입하여 성폭행하여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텔의 복도를 따라 본인이 투숙한 방에서 약 15m 떨어져 있는 피해자의 방까지 걸어간 후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뒤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것인데,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알코올이 임시 기억 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할 뿐,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인 활동을 유지해 블랙아웃은 일시적인 기억상실증에 불과하여 심신장애 상태로 보기 힘들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심신장애로 인한 판단능력 결여와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

양형연구회가 최근 10년간의 성범죄 판결문을 조사한 결과 일반적으로 음주가 성범죄의 주형량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으나 집행유예 확률

11) 부산지방법원 2019. 5. 31 선고 2018고합592

12) 부산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노289

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성범죄 중 강간죄에서는 음주 범행이 비음주 범행보다 형량이 더 낮은 경향이 있고, 이는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의 결과가 아닌 비우발적, 계획적 강간 범행의 가중처벌 결과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위 연구 결과와 같이 최근 법원이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2018고합592, 2019노289 판례와 같이 개별사건에서 법감정과 상충되는 주취감경이 이루어져 사회적 공분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특히 심신장애에 대한 명확한 구별 기준이 없어 법관이 사건에 따른 의학적 평가와 범행 당시 상황 등 제반 정황을 검토하여 책임능력 판단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므로 법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우려가 있습니다.

(라) 제언

부산대학교 여자기숙사 사건 등의 경우 주취감경을 적용한다면 가해자 스스로가 초래한 만취 상태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고 일종의 면죄부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특히 판례의 사안처럼 피고인이 “앞날이 창창한 대학생”이라며 자칫 피해자의 피해회복보다 법관의 가해자에 대한 유리한 양형 판단으로 인해 적정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주취를 이유로 한 심신미약 감경이 받아들여지려면, 2017고합446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여부 자체를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적인 상태에 기인하여 만취 상태에 이르렀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정신적 질병의 치료와 정신보건 차원에서 심신미약을 인정함이 타당하기 때 문입니다.

강력범죄와 폭력범죄는 주취상태 범행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강간 사건의 경우 50% 이상이 음주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과한 음주가 중한 범죄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술로 인한 범죄에 대한 관대한 태도를 근절해야 합니다.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피고인

에 대한 심신미약을 손쉽게 인정해서는 안 되고, 범죄 행위를 슬기운으로 치부하여 감형을 받으려는 시도를 막아야 합니다.

(6)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경된 경우

(가) 관련 판례 분석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대표적인 감경 사유로 분석 대상이 된 판례에서 빈번하게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판례가 실질적으로 초범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경 사유로 삼았는데, 서울고등법원 2018노3543 판결의 경우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 내지 추행하고 지속적인 폭행을 가한 것’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유로 언급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8고합441 판결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들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추행’하였음을 불리한 정상으로 명시하였음에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명시하였고, 그 외에도 분석 대상의 1/4에 달하는 판례에서 유사한 취지의 양형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판례에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음’, ‘집행유예 외에는 전과가 없음’ 등을 감경사유로 제시하며 전과가 있음에도 가벼운 전력이라는 이유로 감경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나) 문제의 제기

위 사안의 피고인들은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성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하지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초범으로 분류되어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물론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은 재범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어 성범죄 양형기준안에 감경사유로 고려되는 것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음을 가중사유로 언급하여 법

원 스스로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초범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감경사유에서 처벌 전력이 없다고 설치하여 모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노476 판결의 경우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방법이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기계적으로 초범 여부만을 고려하여 가해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의심을 들게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가중되어야 하는 사안들에서 형식적인 판단 절차만을 거쳐 감경이라는 결과가 도출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다) 제언

성범죄의 경우 아직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해 있어 신고율이 여타의 범죄보다 낮아 수사기관의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수율도 90% 가까이 된다고 추정될 만큼 높은데,¹³⁾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처벌 전력만을 형식적으로 양형 인자로 검토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범죄 전력이 양형에서 중요한 인자로 고려되는 만큼 여타의 사유들보다 신중하게 검토 후 감경, 가중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모든 압수 범죄까지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최소한 지속적인 범행임이 드러난 경우에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경하는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특히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전과 기록을 통한 형식적인 판단이 아닌, 해당 사안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감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물론 초범이라는 점 자체를 판결문 양형 부분에서 명시하지 않을 경우, 성폭력 가해자가 유리한 양형인자를 인정받지 못했다며 ‘양형부당’으로 항소

13) 여성신문. “나는 꽃뱀이 아니다, 성폭력 피해자다”.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963>. (2020. 02. 13)

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상급심에서 감형을 받게 되는 일이 실무상 발생할 수 있어 초범이라는 점을 명시하는 것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 예시 판례

2019고단349 판결의 경우 ‘피고인 비록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꾸준히 심리상담센터를 찾아 상담을 받는 등 뉘우치고 있으나, 이 사건 버스정류장이나 버스 안 또는 여자화장실 등 일반인의 출입·왕래가 빈번한 장소에서 버스에 승차중인 여성 또는 용변을 보는 여성 등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몰래카메라 촬영을 한 것으로서 죄질 몹시 좋지 못하고, 촬영수법이나 횡수, 촬영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초범으로 선처하기보다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더 크다 할 것인 점’ 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록상으로는 초범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어 참조할 만한 판례입니다.

(7) 친족성폭력에서 ‘부양 사실’에 의한 감형 판례 분석

(가) 사건의 개요

2019고합36등(병합) 판례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름대로 수년간 피해자를 부양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을 근거로 형을 감경한 바 있습니다.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 C와 2006년 동거를 시작한 이래 2017년까지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고, 그 후 따로 거주한 다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를 학대했는데, 피해자를 물에 담가 기절시키거나 코피가 날 정도로 얼굴을 때리고 어지럼증이 발생할 정도로 폭행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협하여 수차례 간음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동학대와 아동청소년 강간, 위력에 의한 간음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년과 5년의 취업제한, 3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나) 문제의 제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성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5년~14년 8월입니다. 즉 징역 14년 8월까지 충분히 선고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어떻게 해서 징역 6년을 선고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판결문에서 실시한 가중사유와 감경사유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중사유	감경사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 2. (성폭력 범죄에 대해) 피고인은 성관계조차 없었다며 모든 범행을 부인 3. 피고인은 피해자와 10년 이상 가족으로 함께 생활해왔고, 그 누구보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 4.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호소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이 없음 2. 피고인이 나름대로 수년간 피해자를 부양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호소하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이 없고 나름대로 피해자들을 부양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들어 징역 6년을 선고한 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가중사유 3번과 감경사유 2번의 충돌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함께 생활해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가중사유이면서 감경사유로 동시에 고려하는 것은 모순적입니다. 성폭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16살이었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학대하며 집 안에서 절대

적인 힘을 과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친부나 의부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의지해야 하는 대상이 자신을 성적으로 기만하고 착취했다는 사실로 인해 더 큰 좌절과 절망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친족성폭력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이 수년간 피해자를 부양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을 감경사유에 넣는 것은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다) 대조 판례

위 판례와 대조되는 설시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친딸을 약 7년간 강간, 강제추행하고 학대한 것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청주지방법원 2019고합131 판결입니다. 이 판결문에서는 “피해자가 자신과 동생들을 보살펴주지 않은 모친과 달리 자신과 동생들을 키워준 피고인에 대하여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면서 피고인에게 한 번 기회를 주고 싶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장기간 격리시킴으로써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립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를 오랫동안 부양해왔고, 심지어 피해자가 이를 들며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더라도 이를 감경사유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8) 결론

2019년도에 선고된 성범죄 형사판결 총 137개를 분석하여 현재 법원이 적용하고 있는 성범죄 양형기준들 중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의 평판, 주취, 초범, 친족관계에서의 부양 사실 등의 감경 요소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위의 여섯 가지 요소들은 모두 다수의 판결에서 실질적인 감경요소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감경요소로 고려되는 데 대하여 각각의 이유들이 존재하였으나 그 적용 과정에서의 문제점들 또한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상담소는 여섯 가지 감경요소들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제언합니다.

1) 가해자의 반성 여부를 감경요소로 남발하는 태도를 지양해야 합니다. 대필 반성, 컨설팅에 의한 형식적 반성, 꼼수 기부 증빙을 통한 반성을 적극 경계해야 합니다. '진지한 반성' 인정의 경우 그 판단 근거를 판결문에 설시해야 합니다.

2) 과연 사회적 유대관계의 존재가 특히 성폭력 범죄에서 재범의 방지 가능성과 과거의 긍정적인 행적에 대한 증거가 되는지 재고해야 합니다.

3) 피고인의 평판과 업적을 쉬이 감형요소로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가중요소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려하며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4) 음주여부 자체를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만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나아가 주취 상태에서의 성범죄는 가중인자로 보는 등의 방안으로써 술로 인한 범죄에 엄격히 대응해야 합니다.

5)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감경할 경우 장기간 반복적으로 저지른 범죄는 아닌지 고려해야 합니다.

6) 친족 성폭력에서 '부양 사실'을 이유로 감경을 인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회신 의견

가. 대법원

○ 2회 이상 음주운전은 법정형에 비취 위험운전 교통사고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게 더 적절해 보인다는 의견

■ 현행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자의 경우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를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음.(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위험운전치상에 해당하지 않는 “2회 이상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과 교통사고 치상(교통법 제3조)의 경합범 경우” 양형기준 적용이 의문임.

- 합의서가 제출된 경우 2회 이상 음주운전이라도 “1. 일반 교통사고, 기본 영역”에 해당하게 되어 법정형 개정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
- 2회 이상 음주운전은 법정형에 비취 위험운전 교통사고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게 더 적절해 보임.

나. 법무부

(1) 설정범위 및 유형분류 관련

- 수정안에는 단순 음주운전 범죄가 누락되어 있음
- 그러나 음주운전은 교통범죄군 중 대표적인 죄명으로서, 최근 법정형이 상향되었고, ‘14~’18년 동안 음주운전 단일 죄명으로 구공판된 인원수가 32,623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양형기준 설정범위에 포함시키고, 별도의 대유형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2) 위험운전 교통사고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관련

- 수정안은 위험운전 교통사고에 대하여도 일반 교통사고의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위험운전 교통사고의 특성상 특별양형인자로서 아래 인자를 추가함이 타당함
 - 다수의 피해자 발생 : ‘피해자가 5명 이상 발생한 경우’(1유형), ‘사망자가 2명 이상인 경우’(2유형)에는 형을 가중할 필요 있으므로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함이 타당함
 -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경우 : 현재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별도 범죄군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양형인자로 반영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 중 불법성이 높은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함이 타당함

-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 : 현재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별도 범죄군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양형인자로 반영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 중 불법성이 높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상태에서 재범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함이 타당함

■ 또한 종래 집행유예 기준상 주요참작사유의 부정적 사유로서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가 적시되어 있었는데, 이에 준하여 다수 피해자 발생 여부 또한 부정적 사유로 추가함이 적정함

다. 대한변호사협회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 1. 6. 제99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이하 ‘수정안’이라 함)이 의결됨. 현행 교통범죄 양형기준 적용 대상범죄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이 2018. 12. 18.개정·시행되면서 법정형 상향이 되었기에 ① 대유형 1 일반 교통사고에 포함되어 있던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을 별도 대유형 2로 신설하고, 대유형 1 일반 교통사고의 일반 양형인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동종전과에서 제외하고 ② 현행 대유형 2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후 도주 유형을 대유형 3으로 바꾸고 형량범위를 일부 수정하는 것임.

위험운전 치상은 일반교통사고에 속한 현행 교통범죄 양형기준(이하 ‘현행기준’이라 함)에 따르면 형량범위가 감경(- 8월), 기본(4월 - 1년),가중(8월 - 2년)으로 나뉘는데, 수정안에서는 감경(6월 -1년 6월), 기본(10월 -2년 6월), 가중(2년 -5년)으로 나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음.

위험운전 치사는 일반교통사고에 속한 현행기준에 따르면 형량범위가 감경(4월 - 1년), 기본(8월 - 2년), 가중(1년 -3년)으로 나뉘는데, 수

정안에서는 감경(1년 6월 -3년), 기본(2년 -5년), 가중(4년 -8년)으로 나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음.

대유형 3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소유형 1 치상 후 도주는 감경(1년 - 1년 6월), 기본(1년 6월 -2년 6월), 가중(3년 -5년) 영역의 상한을 모두 상향하고, 소유형 2 치상 후 유기도주, 소유형 3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소유형 4 치사 후 유기도주(유기도주 후 치사)는 가중영역의 상한을 각각 소유형 2는 5년에서 7년, 소유형 3은 6년에서 8년, 소유형 4는 8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는 내용임.

(2) 신·구조문대비표

양형기준 수정안 참조

(3) 검토의견 : 일부수정, 일부찬성 의견

(가) 결론의 요약

수정안 중 대유형 1 일반 교통사고의 일반 양형인자 정의 중 동종전과를 다룬 가중요소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이하 '위험운전치사상죄'라 함)를 제외한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위험운전치사상죄를 법조경합으로 본 대법원 판결은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저지른 자가 과거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 양형인자 중 가중요소로도 보지 않아, 위험운전치사상죄를 더 중하게 처벌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한 입법자의 의사와도 배치되므로, 수정의견입니다.

또한 대유형 2 위험운전 교통사고는 일반 양형인자의 정의에서 별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저지른 자가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저지른 경우에 일반 양형인자 중 가중요소로 볼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문제가 있으며, 대유형 1의 경우와 같은 이유로 일반 양형인자 중 가중요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수정의견입니다.

수정안 중 기존에 대유형 1 일반 교통사고에 속하던 위험운전치사상죄를 별도 대유형 2로 분류하고 권고하는 형량범위를 상향하는 내용, 대유형 3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소유형 1 치상 후 도주, 소유형 2 치상 후 유기도주의 형량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되는 범죄를 반영한 것이므로 찬성합니다.

보론으로 대유형 3 중 소유형 3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의 형량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은 소유형 3은 대유형 2 중 소유형 2 위험운전 치사보다 법정형 하한이 높음에도 동일하게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가중영역의 상한을 조금 더 상향하는 방향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소유형 3의 형량범위를 상향하는 관계로 소유형 4의 형량범위 중 가중영역의 상한도 조금 더 상향하는 방향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나) 구체적 검토

1) 대유형 1 일반 교통사고의 일반 양형인자 정의 : 수정

수정안은 대유형 1 일반 교통사고(이하 본문에서는 ‘일반 교통사고’라 함)의 양형인자 정의 자. 동종전과에서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제외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저지른 자가 과거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동종전과로 보지 않아, 일반 양형인자 중 가중요소로 적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위험운전치사상죄를 법조경합관계로 본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제3기 양형위원회에서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최초로 만들어 2012. 7. 1. 시행할 당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위험운전치사상죄를 동종전과로 보아 일반 양형인자 중 가중요소로 보았습니다. 또한 제5기 양형위원회에서 교통범죄 양형기준으로 수정하여 2016. 5. 15. 시행할 때에도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은 위험운전치사상죄를 별도의 대유형으로 분류하였다는 이유

로,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저지른 사람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저지른 경우에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일반 양형인자로도 가중요소로 보지 않기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위험운전치사상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흡수된다는 것이 판례이고, 더 중하게 처벌되는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저지르고 다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일반 가중 양형인자로 고려하는 현행 기준안과 다르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위험운전치사상죄를 더 강하게 처벌하려는 내용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함)이 2018. 12. 1.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어 2018. 12. 18.부터 시행되었고, 2008년도에 이미 위험운전치사상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법조경합 관계로 본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처음 마련할 때 동종 전과로 본 점은, 형량범위를 상향하기 위해 위험운전치사상죄를 별도 대유형으로 분류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고려하여야 하는 게 타당합니다.

특히 살인범죄 양형기준에서 일반 양형인자 중 가중요소로 동종 전과와 폭력 실행전과를 포함하고 있고, 강도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일반 양형인자 중 가중요소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원래 동일한 대유형에 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위유형에 공통되는 요소가 있으며, 법조경합 중 흡수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기준과 다르게 일반 양형인자의 가중요소에서 배제할 필요가 없고,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특히 양형위원회 전문위원회 회의자료 중 일반 교통사고의 양형인자 검토 결과를 볼 때, 특별 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에서 음주운전 등의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제외하는 내용만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일반 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에서 과거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저지른 전과를 제외하는 내용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¹⁴⁾

14) 2020. 1. 6.자 제99차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업무보고 25쪽. 다만 위험운전 교통사고 의 양형인자에서 동종전과 정의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무 전문위원의 추가 검토 결과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등의 경우에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제외하는 것은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면 법조경합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흡수되고, 위험운전 교통사고를 별도 대유형으로 분류한 이상 일반교통사고 자체를 적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타당한 반면,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범한 경우에는 선택된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일반 양형인자로도 반영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특히 일반 양형인자여서 권고 형량범위를 감경영역과 기본영역, 가중영역 중 어느 영역을 선택하는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택된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실제 법정형을 어떻게 선고할지 결정하는 데에 고려되는 일반 양형인자로도 반영하지 않기로 하는 수정안은 부당합니다.

2) 대유형 2 위험운전 교통사고의 일반 양형인자 정의 : 수정

수정안은 위험운전 교통사고의 일반 양형인자에서 오히려 일반가중인자인 동종 전과의 범위도 확대하자는 의견을 채택하여,¹⁵⁾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동종전과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동종 전과 범위를 확대한 위험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일반교통사고보다 일반가중인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경우를 포함시킬 필요성이 더 큽니다. 더 나아가 살인범죄나 강도범죄 양형기준을 고려하더라도, 법조경합에서 실제 적용되는 범죄의 경우 일반가중인자인 전과에 동종전과뿐만 아니라 동종이나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교통사고에서는 양형인자의 정의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는 경우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¹⁶⁾의 사유나

29쪽 참조.

15) 2020. 1. 6.자 제99차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업무보고 29쪽.

16)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가 처벌될 범죄에 존재한다면 일반가중인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위험운전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형종 및 형량의 기준에서 동종전과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위반범죄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양형인자의 정의에서 위험운전 교통사고의 양형인자를 별도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이 위험운전치사상죄를 범하여 처벌받게 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전과 전부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할 것인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사유가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만 동종전과로 반영할 것인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¹⁷⁾ 양형인자의 정의에서 일반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위험운전 교통사고라는 대유형의 양형인자도 명시하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동종전과를 동일하게 볼 경우라 하더라도, 대유형 2의 양형인자 정의에서 대유형 1의 양형인자를 준용한다고 규정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며, 동종전과를 다르게 볼 경우에는 대유형 2의 양형인자 정의에서 아래에서 별도로 명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유형 1의 양형인자 정의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동종전과 부분만 위험운전치사상죄를 범한 자가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과를 동종전과로 본다는 내용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도 동종전과로 본다는 내용과 함께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위험운전치사상죄 별도 대유형 분류와 형량범위 상향 : 찬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17) 전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일반교통의 위험을 증가시켰다는 부분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위험운전치사상죄의 공통점을 강조하는 관점이고, 후자는 음주나 약물 등이 운전 개입한 경우만을 공통점으로 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8. 12. 1.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어 2018. 12. 18.부터 시행된 특가법 제5조의11에서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법정형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수정안은 당초 대유형 1 일반 교통사고에서 규정하되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저지른 사실 자체를 특별 양형인자 중 가중요소로 보았던 현행기준과 다르게, 위험운전치사상죄를 별도 대유형 2 위험운전 교통사고(이하 본문에서는 ‘위험운전 교통사고’라 함)로 분류하고 대유형 1 일반 교통사고보다 권고형 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를 상향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수정안은 위험운전치사상죄를 더 중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법률개정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합니다.

4) 대유형 3 중 소유형 1과 소유형 2 형량범위 상향 : 찬성

대유형 3 중 소유형 1 치상 후 도주(이하 ‘치상 후 도주’라 함)는 징역형의 법정형 하한이 1년으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이하 해당 법률을 특가법으로 약칭함), 대유형 2 중 소유형 1 위험운전 치상(이하 ‘위험운전 치상’이라 함)의 법정형 하한과 같기에 양자의 균형을 맞추고자 형량범위 중 감경, 기본, 가중영역의 상한을 모두 동일하게 상향하였습니다(별첨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설명자료 4쪽¹⁸⁾).

또한 소유형 2 치상 후 유기도주(이하 ‘치상 후 유기도주’라 함)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특가법 제5조의3 제2항 제2호), 위험운전 치상의 징역형 법정형인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보다는 높으나 (특가법 제5조의11 전단), 소유형 2 위험운전 치사(이하 ‘위험운전 치사’라 함)의 법정

18) 2020. 1. 6. 자 제99차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업무보고 22쪽에서는 더 자세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음

형인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특가법 제5조의11 후단)보다 낮습니다.

위험운전 치사의 가중영역 상한이 5년이므로, 법정형 하한이 더 높은 치상 후 도주의 가중영역 상한을 5년에서 상향하되, 법정형에 무기형이 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위험운전 치사의 가중영역 상한인 8년보다 낮은 7년으로 형량범위를 조정하는 수정안이 타당합니다.

5) 대유형 3 중 소유형 3과 소유형 4 형량범위 상향 - 보론

가) 소유형 3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형량범위

대유형 3 중 소유형 3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이하 ‘치사 후도주’라 약칭함)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위험운전 치사의 법정형인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보다 하한이 높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은 위험운전 치상과 치상 후 도주의 징역형 법정형의 하한이 같기 형량범위의 상한을 동일하게 맞추었는데도 불구하고, 도주 후 치사보다 위험운전 치사의 법정형 하한이 높음에도, 전자의 가중영역 상한을 후자와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특히 양형자료 조사 결과¹⁹⁾에 따르면 현행기준에 따라 치사 후 도주의 가중영역 상한이 6년인 상황에서, 가중영역이 적용된 사건의 27.6%에서 6년이 선고되었고, 7년을 선고한 사례도 존재하였습니다. 징역형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인 위험운전 치사의 가중영역 상한을, 위험운전치사를 더 중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8년으로 상향하였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더 중하게 처벌되어야 하는 치사 후 도주는, 위험운전 교통사고를 별도 대유형으로 신설하여 형량범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8년보다는 9년으로 상한을 정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가중영역의 상한을 9년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하한은 4년으로 구체적인 양형인자에 따라 적정한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위험운전 치사보다 더 중하게 처벌되어야 하는 치사 후 도주 사건의 권고하는 형량범위

19) 2020. 1. 6. 자 제99차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업무보고 20쪽 참조.

상한을 위험운전 치사와 동일하게 하고, 상한을 벗어나는 형을 선고할 경우 양형이유를 밝히도록 하면(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2항 본문) 법정형이 더 높은 치사 후 도주 사건의 상한을 위험운전 치사와 같게 사실상 강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양자의 법정형을 달리한 입법자의 의사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에서 법정형을 조정한 수정안의 내용과도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치사 후 도주의 가중영역 상한을 9년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나) 소유형 4 치사 후 유기도주(유기도주 후 치사) 형량범위

소유형 4 치사 후 유기도주(유기도주 후 치사, 이하 ‘치사 후 유기도주’라 약칭함)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위험운전 치사의 법정형인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보다 하한이 높을 뿐만 아니라 법정형에 사형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험운전 치사의 가중영역 상한 조정에 맞춰 치사 후 도주의 가중영역 상한을 9년으로 한다면, 치사 후 도주와 치사 후 유기도주의 가벌성 차이를 고려하면 치사 후 유기도주의 가중영역 상한은 10년으로 하기 보다는 11년이나 12년 정도로 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가중영역 상한을 그와 같이 조정하더라도 가중영역의 하한은 5년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현행기준이나 수정안 모두 치사 후 도주와 치사 후 유기도주, 치사 후 도주와 치사 후 유기도주의 가중영역 상한 사이에 2년 정도 차이를 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치사 후 도주의 가중영역 상한을 9년으로 한다면, 가벌성에 차이가 있는 치사 후 유기도주의 가중영역 상한은 11년이나 12년 정도로 하여 법정형을 달리 규정한 양자의 형량범위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라. 대한법무사협회

○ 양형기준 수정안에 찬성하므로 특별한 의견 없음

마. 한국여성변호사회

(1) 의견 요지

교통범죄의 일반양형인자 중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의 ‘위험한 부위’가 어디를 의미하는지 불분명함

(2) 의견 내용

귀 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통번호 19쪽 양형인자의 정의 중 사.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제1유형)에 관한 설명부분, 「치료기간이 약 4~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에서 위험한 부위가 구체적으로 어디를 의미하는지 다소 불분명합니다. 일반국민 입장에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 예시나 부연설명을 하여주시면 형벌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

(가) 유형 신설에 대한 검토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에 따른 법정형은 치상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임을 고려하여도 매우 무겁게 처벌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과거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취지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일반 교통사고의 유형으로 다루면서 음주운전사실이 있다는 점을 특별양형인자로만 고려하면 위험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조차 권고형량이 1년 이상 3년 이하로 정해져 법정형과의 괴리가 매우 컸습니다. 본 수정안이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양형기준상 별도의 유형으로 분리한 결과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과 법정형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일치시킬 수 있게 되었으므로, 형종의 신설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나) 양형인자에 대한 검토

1)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런데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서 정하고 있는 개념으로, 동조 제20호에 따른 ‘자전거’와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결국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위험운전치사상죄를 범하는 경우는 개념상 포함되지 않으므로,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인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로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큰 바, 위험운전 교통사고에 있어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사망사고의 중대성과 비난가능성을 감안하여 가중하여 양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1호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만을 규정할 뿐 어린이가 사망한 경

우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과 같은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위험운전 교통사고로 인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는 가중요소에서 제외되는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백은 의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의 법문을 그대로 가져온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양형기준에서는 이에 대한 문구 추가 등의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3) 동종 누범(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 포함),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 포함)

양형 기준안이 가중요소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를 동종 누범과 동종 전과에 포함시킨 것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음주운전은 상습적으로 범하는 경우가 많고, 음주운전행위 자체가 교통사고의 위험을 수반하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를 범한 후 위험운전치사상을 범한 경우 양형의 가중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2) 교통사고 후 도주의 유형

(가) 형량범위 상향에 대한 검토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과 교통사고 후 도주 유형이 모두 일반 교통사고 유형의 가중유형임을 고려하면, 두 유형의 형량범위의 균형을 맞춘 것은 타당합니다. 또한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유기도주인 경우 가중영역 상향을 상향하였는데, 해당 사안의 비난가능성과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V. 성범죄,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 공개(의결 후 절차)

1. 개요

- 양형위원회에서 의결된 양형기준은 형사재판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양형기준의 공개는 양형기준 적용의 투명화, 적정화 및 양형기준 개선 논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양형기준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

2. 관련 규정

- 양형위원회규칙

▶ 제6조(양형기준의 공개)

- ① 양형기준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공개와 함께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 제20조(양형기준의 효력발생시기)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 날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위원회는 관보게재일 이후의 날을 지정하여 양형기준의 적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3. 공개 방법

- 관보 게재(전자관보 및 종이관보)
 - 관보게재 :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
-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양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sc.scourt.go.kr>)에 게재

4. 추진 일정

- 양형기준 의결 예정 : 2020. 3. 23. 양형위원회 제101차 회의
- 관보 게재 의뢰 : 2020. 4. 초순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 2020. 4. 하순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VI.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1.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 의견 보고

○ 양형위원회의 활동 및 양형에 관한 정책 건의, 제안 등을 듣고자 하는 국민 참여 공간인 '양형위원회에 바란다'(<http://sc.scourt.go.kr>)에 접수된 의견 보고

○ 접수 의견

연번	접수일자	의견요지
1	2020.02.15.	○ 국민 정서에 반하는 판결이 양형기준 때문인지 문의
2	2020.02.20.	○ 심리기반의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성인지교육) 제안의 건

○ 1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아동 성범죄자의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종을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고하여야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는 권고적 기준에 해당하며,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 기관임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2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에 문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별도 회신은 하지
아니 함

2. 서면질의 등 민원 및 회신

가. '국민신문고 게시판'

○ 접수의견

순번	접수일자	질의요지
1	2020.01.29.	○ 주취 범죄 감경규정 삭제 및 주취 범죄 가중처벌법 제정 요구
2	2020.01.30.	○ 폭력범죄, 주취범죄, 성범죄 형량 강화 요구
3	2020.02.17.	○ 범죄자에 대한 형량 강화와 사형 미집행 문의
4	2020.02.19.	○ 성차별적인 판결은 없어야 합니다

○ 1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처에 접수(2020. 1. 29. 접수번호 :
2AA-2001-176500)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주취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
하는 의결 기관으로 우리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2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처에 접수(2020. 01. 30. 접수번호 : 2AA-2001-463713)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폭력범죄, 주취범죄,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3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처에 접수(2020. 02. 17. 접수번호 : 2AA-2002-0207467)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범죄자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 기관으로 우리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4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처에 접수(2020. 02. 19. 접수번호 : 2AA-2002-0225192)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 기관으로 우리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나. 민원 우편

○ 접수 의견

	접수일자	질의요지
1	2020.02.19.	○ 피고인의 사건(마약류관리법위반)과 관련한 몇 가지 판례를 송부하여 달라는 내용
2	2020.02.22.	○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고인으로, 자신에게 선고된 형량이 가혹하다는 내용
3	2020.02.28.	○ 진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고인으로, 형사사건 양형기준안을 송부하여 달라는 내용

○ 1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

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은 양형위원회의 업무와 무관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는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에 따라 관보 게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양형기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 양형기준」 및 「2019 양형기준 추록」 책자는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및 관계기관(교도소 포함) 등에 배포하였으므로 그곳에서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며, 양형위원회 홈페이지(<http://sc.scourt.go.kr>) 양형기준 코너에도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2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개별 형사재판에서의 법원의 판단 및 재판 결과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답변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에 따라 관보 게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양형기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 양형기준」 및 「2019 양형기준 추록」 책자는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및 관계기관(교도소 포함) 등에 배포하였으므로 그곳에서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며, 양형위원회 홈페이지(<http://sc.scourt.go.kr>) 양형기준 코너에도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3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양형위원회는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에 따라 관보 게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양형기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 양형기준」 및 「2019 양형기준 추록」 책자는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및 관계기관(교도소 포함) 등에 배포하였으므로 그곳에서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며, 양형위원회 홈페이지(<http://sc.scourt.go.kr>) 양형기준 코너에도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별지1]

신임 전문위원 프로필

	성 명	백 광 균 (白光均)
	생년월일	1979. 10. 19.생
	출 생 지	부산
	소 속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출신학교	서울대학교
주 요 경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8. 서울과학고등학교 졸업▶ 2005.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2005.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2008.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2008. 육군법무관▶ 2010.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 2011. 4. 부산지방법원 판사▶ 2016.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2020. 2. 24. [現]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별지2]

	성 명	이 형 일 (李炯一)
	생년월일	1973. 02. 23.생
	출 생 지	서울
	소 속	군법무관
	출신학교	고려대학교 법학과
주 요 경 력		
▶ 2000.	제14회 군법무관 임용시험 합격	
▶ 2003.	사법연수원 수료(법무14기)	
▶ 2004.	이라크평화재건사단 검찰관	
▶ 2007.	방위사업청 법무담당관실 외자송무담당	
▶ 2013.	공군본부 법제과장	
▶ 2016.	공군 작전사령부 법무실장	
▶ 2019.	공군 군사법원 재판2부장	
▶ 2020.	[現]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	